



[제33호서식]

등부 2024 년 제 2521 호

인 증 서

이 사 회 의 사 록

1. 일 시 : 2024년 4월 4일 11시 00분

2. 장 소 : 본점회의실

3. 출석 상황	이사총수	5명	감사총수	0명
	출석이사수	5명	출석감사수	0명



의장 대표권있는 이사 김*태는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제 1 호 의 안 : 지점설치 및 지점명칭변경의 건

의장은 당 법인의 지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,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다.

신지점

1.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로 1316 (울산광역시 연합회)
2.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31번길 11, 3층(봉선동, 무등프라자)

설치년월일 : 2024년 4월 4일

지점명칭 변경

경상북도 지회를 경상북도 연합회로 변경

변경년월일 : 2024년 4월 4일

의장은 이상으로 금일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음을 알리고 11시 30분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의사록의 경과요령과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, 감사가 아래에 기명 날인하다.

2024년 4월 4일

사단법인 장애인미래에너지창조연합회

의장 이사(대표권 있는 이사) 김 광 태

이 사 김 * 태

이 사 배 * 화

이 사 서 * 기

이 사 이 * 은

이 사 김 * 영



등부 2024년 제 2521 호

인 증

위 사단법인 장애인미래에너지창조연합회 _____의
2024년 4월 4일자 이사회 의사록에 대하여 _____
이사 김*태, 동 배*화, 동 서*기, 동 이*은, 동 김*영의 각 대리
인 김지훈은 _____

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
하고, 그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.
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
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축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
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.

2024년 4월 5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.

공증인가 법무법인 아 시 아
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
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5, 3층 (서초동, 중산빌딩)

공증담당변호사

김 동 화 ①

아 래

1. 주민등록증
2.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
3. 확인서
4. 진술서
5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
6. 정관